

● 제320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(의안번호 1066)
검 토 보 고 서

2023. 9. 4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전병주 의원 발의 】

의안번호 1066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전병주 의원(찬성 30명)
- 나. 제안일 : 2023. 8. 14.
- 다. 회부일 : 2023. 8. 21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양육자와 아이가 존중받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'서울키즈 오케이존'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. 이에 따라 「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보호자 친화업체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보호자 친화업체 인증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 5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.
- 다. 입법예고(2023.8.24.~8.28.) 결과 : 의견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하고 있는 ‘서울키즈 오케이존’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통해 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보호자 친화업체 인증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보호자 친화업체 인증제의 운영 (안 제5조2)

- 안 제5조의2는 자녀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보호자 친화업체로 인증하는 제도의 시행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.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<신 설>	<u>제5조의2(보호자 친화업체 인증제의 운영) ① 시장은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보호자 친화업체로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친화</u>

현행	개정안
	<p><u>업체 인증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<u>③ 시장은 인증을 받은 업체가 인증의 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</u></p>

-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 판단하고 식당 이용대상에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음¹⁾.
- 하지만 많은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키즈존은 여전히 존재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²⁾.
- 최근 민간 조사기관에서 전국 18세이상 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‘노키즈존에 대한 인식 조사’ 결과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3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특히 2021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그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³⁾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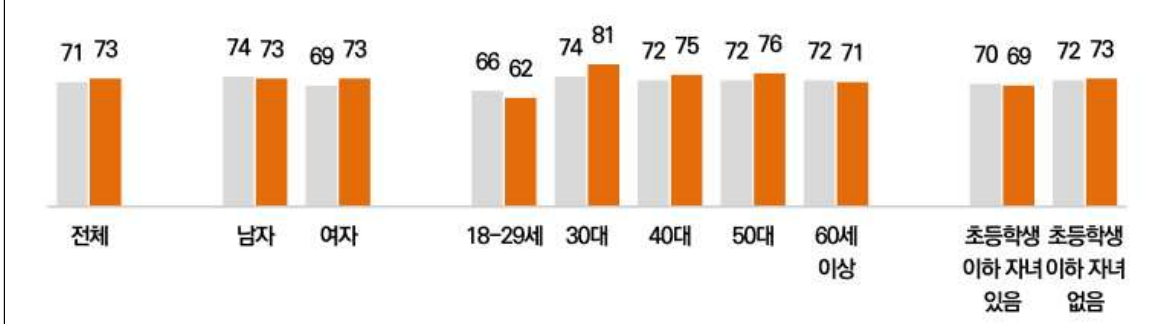
1) 국가인권위원회, 아동청소년인권과 “인권위 “노키즈 식당은 아동 차별” 2017.11.24

2) YTN, CNN “출산을 최저 한국에서 ‘노키즈존’ 성행...역효과 낼 것”, 2023.6.26

3) ㈜한국리서치, “여론속의 여론-기획: 노키즈존에 대한 여론 변화는?”,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(제219-2호), 2023.2.22.

질문 : ‘노키즈존’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

▶ 표본 수 : 각 조사별 1,000명 ▶ 조사기간 : (1차) 2021.11.12.~15 (2차) 2023.2.10.~13.



- 또 다른 조사⁴⁾에서는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공공장소에서 만 13세 어린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편을 겪었던 장소로는 식당(72.2%, 중복응답)이 압도적으로 많았음.
- 이에 ‘노키즈존’ 등의 문제를 개인 또는 양육자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을 전환시키고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.
- 개정안은 인증제의 대상이나 기준, 방법 및 지원사항 등 인증제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데, 인증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장에게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인증제에 대한 시장의 재량범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.
- 다만 민간영역에서의 ‘노키즈존’은 해당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의사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, 동 개정안은 보호자

4) 트렌드모니터, “2023 노키즈존(No kids zone) 관련 인식 조사”, 2023.5.26.

친화업체로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예산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민간업체에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인 동 사업을 활성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- 동 개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은 보류 요청과 함께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음.

개정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키즈존으로 인한 아이와 양육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아이 동반 가족이 편안하게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 조례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, ○ ‘보호자 친화업체’ 개념이 업종을 특정하지 않는 등 광범위하여 관련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며 ‘보호자 친화업체’라는 명칭은 아이 외 다른 취약 계층을 돌보는 보호자도 의미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.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양육자와 아이가 존중받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자 친화업체에 대한 인증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임.
- 다만, 인증 사업의 대상이나 기준, 방법뿐만 아니라 인증업소에 대한 지원 사항과 인증제 추진을 위한 별도의 예산지원 규정 등 개정안의 내용이 다소 미비하여 인증제 시행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, 동 조례 개정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임.

- 집행기관 역시 인증업체의 업종을 특정하지 않아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개정안에 대한 유보적인 의견을 제출하였음.